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 호 1692

제안일자 : 2024. 04. 30.
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·감독과 함께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안 제17조제5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의무를 제출로 수정함.

#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○ 안 제17조제5항 중 "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,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"를 "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"로 수정함.(안제17조제5항)

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5항 중 "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,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"를 "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"로 수정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	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	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
구 지원) ① (생 략)	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	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	⑤	5
사무총장으로부터 <u>사</u>	<u>አ</u> }-	
업 계획서 및 사업	업 계획서, 사업 결과	
<u>정산서</u> 를 제출받은	<u> 및 정산서</u>	
경우에는 지체 없이		
서울특별시의회에 제	서울특별시의회에 제	<u>서울특별시의회 및</u>
출하여야 한다.	출하고, 이를 소관 상	소관 상임위원회에
	임위원회에 보고	<u>제출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"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"를 "사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산서"로 하고, "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"을 "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 ① (생 략) 1. ~ 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부터 <u>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</u>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⑤      사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         산서     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         원회에 제출